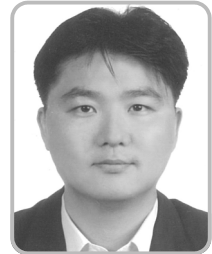


[정책소개]

2015년도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개정사항 안내



김 승 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

■ 사료관리법 하위고시 개정 추진 배경

- 「사료관리법」에 따라 고시에서 안내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구체적인 물질과 유형별 권장유통기간, 명칭 세분화 기준, 자가품질검사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여 사료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인 등의 법률 이해도 제고 도모
- 축산물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
- HACCP 지정 사료공장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사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료원료 증명서 등 범위 확대 및 일부 미비점 보완

■ 그동안 추진 경과

-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개정 검토회의 및 사료업계·학계 간담회 등(15.2.23

~8.13)

- 「사료관리법」하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5.6.1~6.18)
- 「사료관리법」하위 고시 개정(안) 추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5.6.24~7.13)

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구체적 물질과 유형별 권장유통기간, 명칭 세분화 기준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 등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감사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구체적 물질을 고시에 추가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제5조의2, 제7조)
- 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보완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제7조제3항)
- 사료의 유형별 권장유통기간을 설정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제8조제9항)
- 성분등록 기본 요건표를 안내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제9조제10항)
- 성분등록 및 표시·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제9조제11항, 제10조)
- 닭·오리·꿩·거위·메추리·칠면조·타조 등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남은 음식물 사용금지(제11조제4항)
- 기타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별표 15)
- 사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감사원의 축산물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바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별표 16, 별표 20)

2. 「사료검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

사기준 등을 최근 경향치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체계는 강화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사료검사기관이 사료검정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조, 제5조)
-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을 최근 경향치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체계는 강화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제13조)
- 정밀검정 대상 사료에 대한 중점 관리성분을 정하여 수입사료의 안전성관리를 강화하되, 수입업자의 부담은 완화(제25조)
- 사료검정인정기관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수입사료에 대한 검정증명서 발급체계 구축(제27조)
- 검정기간을 단축하여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제31조)

3.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HACCP 지정 사료공장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애완동물용 사료 중 간식용·영양보충용에 적합한 실시상황 평가표를 보완하여 사료공장 HACCP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HACCP 지정 사료공장에 대한 사료검사 면제 항목 및 기간을 확대하여 우대조치 강화(제12조)
- 배합사료공장 실시상황 평가표를 보완하여 애완동물용 사료 중 간식용·영양보충용 등에 대한 사료공장 HACCP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지 제1호 서식)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등의 평가표를 보완하여 섬유질발효사료에 대한 사료공장 HACCP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지 제2호 서식)

4.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료 원료에 대한 사용가능 증명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증명서를 추가하고,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서식으로도 수출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사료원료에 대한 사용가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제2조, 제6조)
- HACCP 인증 작업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제2조, 제4조, 제6조)
-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서식으로도 수출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제8조) 